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5462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변론 종결 2015. 1. 21.

판결 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089,939원 및 그 중 145,931,256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655,088,999원에 대하여는 2014. 6. 23.부터 각 2014. 8.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2010. 5. 27. 보증금액 722,5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6., 대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2013. 5. 23. 보증금액 144,4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2.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의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변제액 및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3)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4)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850,000,000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14. 3. 10.경 원금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5)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30. 국민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채무 145,931,256원을, 2014. 6. 23. 하나은행에 피고 A 대출금 채무 657,048,919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으로부터 1,959,920원을 변제받아 하나은행에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원본에 충당하였다.

7)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69,04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나머지 구상금 합계 801,020,255원 [145,931,256원 + (657,048,919원 - 1,959,920원)], 2014. 6. 23. 변제받은 1,959,920원에 대한 당일 1일분 확정 지연손해금 644원[1,959,920원 × 1일/365일 × 0.12]과 위약금 69,040원 합계 801,089,939원 및 그 중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45,931,25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5. 30.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655,088,999원(657,048,919원 - 1,959,92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3. 10. 31.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위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3. 10. 31.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3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매매계약일 이후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각 연대보증약정에 터 잡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란 결국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할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A이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4. 3. 10.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다음 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각각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12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평균 약 1,900,000,000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다가(특히 위 매매계약 당시인 2013년 4분기의 매출액은 2,291,116,064원으로 평소보다 높다) 2014년 1분기 매출이 841,401,969원으로, 2014년 2분기 매출이 7,227,000원으로 급격히 감소된 사실도 인정된다.

3) 그런데 기록상 위와 같이 피고 A의 매출이 2014년 1분기부터 급격하게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와 같은 원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매출액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일응 피고 A의 영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4개월만에 피고 A이 대출금 연체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성배

판사허윤범

판사박서우

별지